

## 3. 改正條例(案)

## 대구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新·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보조자) <u>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께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u>	제4조(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13. 大邱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條例案

발의년월일 : 1992년 12월 일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1. 提案理由

지방의회에서의 보고·서류제출의 요구, 증인·감정등에 관한 질차 및 불칙조항을 규정,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안전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主要骨子

## ○ 증인의 출석의무 등

— 증인출석의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거부 금지

## ○ 의회의 출석요구권

- 출석요구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의 동행명령
  - 증인·감정인에 대한 선서의무
  - 증인의 헌법 및 법률상 권리보호
- 출석의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규정
- 불출석의 죄, 의회모욕의 죄, 위증의 죄, 고발 등

### 3. 制定條例(案)

#### 대구직할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의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사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기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광무원이었던 사가 증인의 요구를 받거나, 대구직할시와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이 조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상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출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자에는 해당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말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증인의 서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채록 기타 해당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농행명령장을 해당증인에게 재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건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 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간접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현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사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을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의 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검증)(1)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2) 대구직할시와 그 소속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대구직할시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도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3월 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의회보복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보복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빙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의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의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參考資料

##### 1. 地方自治法 關聯條項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0조(벌칙의 위임) 시·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 2.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查나 國政調查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發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查나 國政調查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感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證言등의 거부) ①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發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公務上 祕密에 관한 發言·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發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發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祕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發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比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나안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發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 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發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의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證人등을 출석요구 등)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查나 國政調查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の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 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の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规定을準用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 國政監查나 國政調查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

③ 第2項의 同行命令狀에는 해당 證인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인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同行命令狀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 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 現役軍人인 證인이 营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狀 執行에 協力할義務가 있다.

第7條(證人·鑑定인의 宣誓) ① 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查나 國政調查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會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参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發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偽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规定을 準用한다.

第9條(證人の 보호) ①國會에서 發言하는 證人은 答辯人인 答辯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答辯人은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發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特別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錄音·錄畫·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查받은 者는 이 法에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查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錄取한 錄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查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發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檢證) ①委員會는 監查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檢證을 행할 수 있다.

②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规定을 準用한다.

第11條 (旅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规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發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不出席等의 罰)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發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1년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的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國會侮慢의 罰) 證인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침손한 때 또는 證인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懲役에 처한다.

第14條(偽證 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假意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發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查나 國政調查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國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3條 또는 第14條 第1項 本文의 罪를 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 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查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위원장의 名義로 한다.

③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狀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查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3. 刑事訴訟法關聯條項

#### 제12 장 증인심문

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사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發露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家主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민리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개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단일 거짓말이 있으므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여야 한다.

## 제13장 감정

제17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혀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의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 14. 山格아파트地籍整理推進經緯調查案

發議年月日：1992. 12. 22

發 議 者：金鉉模議員 外 9人

## 1. 調査의 目的

- 산격아파트가 '79년, '80년 각각 신축분양된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아파트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 입주민들의 공유지분 감소분 환원요구와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및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아파트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추진경위를 조사하기 위함.

## 2. 調査할 事案의 範圍

- 가. 산격아파트 지적정리 추진현황
- 나. 대지등기 미정리 원인 및 문제점
- 다. 아파트부지를 학교용지로 매각 경위

## 3. 調査委員會：建設委員會

## 4. 根據條例：大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관한條例

大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

## 15. 山格아파트地籍整理推進經緯調查計劃案

## □ 調査의 目的

- 산격아파트가 '79년, '80년 각각 신축분양된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아파트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 입주민들의 공유지분 감소분 환원요구와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및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아파트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추진경위를 조사하기 위함.